

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()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 5일	
신청인	상호(법인명)			사업자등록번호	
	대표자			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	
	주소			전화번호/팩스번호	
제조사		제조국가명		상호(회사명)	
면제대상 승강기안전 부품	승강기안전부품명			모델명	
	정격전압/전류(해당하는 경우만 기재)			모델 구분(필요시 별지 사용)	
	수량			금액	
	사용장소				
면제 신청사유		[] 연구개발, 전시 또는 시험용 [] 수출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[] 외국의 인증을 받은 경우 [] 자체적으로 안전성시험을 한 경우 [] 일회성으로 수입한 경우 [] 부품안전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기타(그 밖의 면제사유 기재)			

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 제1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귀하

붙임서류	1. 사업자등록증 사본 2. 법 제12조 각 호(같은 조 제2호는 제외합니다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	수수료 제8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
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

유의사항

1.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2.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
처리절차

